

대구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141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피고A

변론 종결2022. 7. 15.

판결 선고2022.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접수 제179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1. 당사자관계

원고는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B(이하 'B'이라 합니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구상금채권)

가. B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B는 2012. 2. 24.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합니다)과 4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여신거래약정서 참조), 이에 원고는 2012. 2.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B가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발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신용보증서, 갑 제4호증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각 참조).

- 다음 -

(가) 보증번호 : D

(나) 보증금액 : 34,000,000원 (보증비율 : 85%, 이후 23,715,000원으로 변경)

(다) 보증기한 : 2013. 2. 22. (이후 2021. 8. 13.로 변경)

나. 보증약정의 내용 1) 보증채무의 범위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C은행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2) 구상채무의 범위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한편,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21. 1. 1.부터 연 8%입니다(갑 제5호증 손해금률 인하안 참조).

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에 따른 구상범위 1) 원고의 대위변제

B가 2021. 6. 26.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갑 제6호증 사고/구상권원장 참조), 원고는 2021. 10. 13. 위 약정과 관련하여 24,169,392원을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 기타채권의 발생

한편, 위 약정과 관련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453,964원과 B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수추가보증료 77,960원이 각 발생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사고/구상권원장 참조).

3) 구상범위

따라서 원고가 B에게 청구할 구상금 채권은 총 24,701,316원(= 대위변제금 24,169,392원 + 대지급금 453,964원 + 미수추가보증료 77,960원)이 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시기(대위변제일 2021. 10. 13.)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증여계약(2021. 4. 20.)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B는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6. 26. 신용관리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B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2021. 4. 2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179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8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었는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한층 더 심화시켰으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그렇다면,

1)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179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판단

갑제1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가 2021. 4. 20. 체결한 증여계약은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17906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종화

별지